

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관련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 및 『자본시장법 시행령』에 따라 당행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

가.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한다.

- 1) 생산·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- 2)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경영·부수 업무
- 3) 구체적인 업무특성,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
- 4)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

나. 은행이 설정한 ‘정보교류차단 부문

- 1) Global Markets Business related department(자금부 업무 관련 부서)
 - Global Markets (자금부)
 - Global Market Operations (자금업무부)
 - Product Controls (자금상품관리부)
- 2) Fund Services (수탁업무부)
- 3) Wealth and Personal Banking (개인금융부):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한함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-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가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
- 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2) 투자자가 예약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5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- 6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(해당 요구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)
- 7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제 3 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(해당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)
- 8) 은행 또는 투자자 중 어느 일방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제시된 잠정적인 매매 조건 또는 의향에 관한 정보
- 9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나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
- 1) 부동산(지상권·역세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- 2)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3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4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은행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5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

가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

- 1) 은행이 고객과 경쟁적/이해상충적 거래를 제안 또는 주관하는 경우
- 2) 은행이 고객의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3) 은행이 고객의 경쟁자에 대하여 (경쟁관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)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4)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영업 활동의 경우
- 5) 은행이 고객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일반 거래와 같은 수준의 계약조건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
- 6) 은행이 고객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
- 7) 은행이 제 3자와의 거래에 따라 정상적인 수수료 외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
- 8) 기타 은행과 고객간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

나. 대응 방안

- 1)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“거래 중단”, “고객에게 공개 또는 동의 취득”, “업무 분리” 중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며,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부에 문의하여 처리한다.
- 2) 달리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HSBC 그룹의 이해상충 레지스터 및 이해상충에 관한 그룹지침을 따른다.

6. 기타 정책의 주요 내용

가.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체계 구축

- 1) 사무 공간의 분리
- 2)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- 3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- 4)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나. 임직원의 겸직과 파견 관리

다.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 교류 관리

라.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

마. 기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은행 내규 (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)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통제 하에 관리